

축 산 업 경 영 관 리(5)

민 경 태
(퓨리나코리아 경영지도부장)

7.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1. 유동자산

지난호에서 설명한 유동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자산도 유동자산에 속한다.

(11) 선불금(先拂金)계정 : 앞으로 기업 운영을 위하여 구입할 물품의 대금으로 물품을 매입하기 전에 지불한 금액을 말하며 예를들면 사료를 구입하기가 힘든 경우나, 병아리를 구입하기 힘든 성수기에 가끔 미리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료대나 병아리대금으로 미리 지불한 금액을 부기학상 용어로 선불금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미리 지불한 금액도, 채무가 아닌 것이 불명하며 자신에 속하는데 그 물품이 자기 기업에 현품으로 인도되어 제품화한 후 현금화되기 까지의 기간이 1년이내일 것이므로 유동자산에 속한다. 후일에 그 대금을 선불한 물품이 현품으로 자기 기업에 인도될 때에는 인도된 금액만큼 선불금이 줄어 들고 따라서 원재료인 사료나 또는 병아리등의 금액이 그만큼 늘게 된다.

(12) 선급비용(先給費用)계정 : 선급 비용이란 앞에서 설명한 선불금과 구별되는 것으로 미리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즉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선이자를 지불하는데 시간적으로 볼때 다음달치 이자를 이 달에 미리 지불하는 것으로 이는 지급이자라는 비용을 선불하는 것이다. 다음에 또 한가지 예를든다면 전물의 화재보험료, 넬째 통상 1년분을 선불하게 되는데 이는 보험료란 비용을 선불하는 것임으

로 선급비용에 속한다.

다음으로 축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합사료나 사료용곡물등은 축산업이 사료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합사료나 사료용곡물등은 가축의 사육을 위한 일종의 원재료임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님으로 상품계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계란같은 축산물이 상품계정에 속하며 사료나 사료용곡물 및 부원료인 첨가물등은 재고품 계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3) 기타 재고품 계정 : 기타 재고품 계정이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생산공장에서의 원재료에 속하는 배합사료, 사료용곡물, 첨가물 비료등과 같은 재고품이 이에 속한다.

기타 재고품 계정에는 다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기타 재고품 계정 : 가) 배합사료
나) 곡물
다) 첨가물
라) 비료

가축사육용 배합사료나 곡물 첨가물(방역용약품이 아닌 첨가물로서의 가축약품) 및 비료등을 기타 재고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가축의 사육을 위하여 위에서 열거한 물품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결산기에 이르면 반드시 약간의 재고품이 남게 된다. 재고품 계정을 사용하면 결산을 볼때 원가계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배합사료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사업개시초)에 배합사료의 기초재고량이 10포있었고 결산을 보는 기말에 배합사료 기말재고가 20포 있다고 보고 당해 사업기간 동안에 구

입한 배합사료량이 100포라고 한다면 가축사육용으로 사용한 배합사료의 양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기초재고(10포)+당기 매입(100포)-기 말재고(20포)=90포, 이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물량으로 표시한 것 뿐이고 결산시에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다. 다른 재고품의 원가계산방법도 이와 동일하다.

(14) 저장품계정: 저장품계정이란 일종의 소모품을 기록처리하는 계정으로 이에는 방역용 및 소독용 가축약품, 비, 솔, 비누, 깔집 등과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축산업에서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금 및 가축의 계정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가금 가축도 기업자본으로 구입한 이상 기업의 자산중,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 아니면 기타자산중 어느부문엔가에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가금이나 가축을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가금이나 어느 가축을 고정자산에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자산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는데는 그 자산이 기업활동을 통하여 현금화되는 기간의 장단(長短) 즉 그 기간이 1년이냐 또는 1년이상이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설명한바 있다.

축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종목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가금으로는: 종계 산란계 부로일려(육계), 배추리, 오리, 꿩 등을 들 수 있겠고

가축으로는: 돼지, 젖소 및 비육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면

돼지: 비육돈 종모돈, 종빈돈

젖소: 젖소, 젖소종모우, 젖소종빈우,

비육우: 비육우 비육우종모우 비육우종빈우

가금이나 가축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분류할 수 있겠다.

1. 종계, 산란계, 부로일려, 배추리, 오리, 꿩 등과 같은 가금류를 유동자산으로 보고 소, 돼지, 등과 같은 가축을 고정자산으로 보는 방법

2. 가금 및 가축의 수명을 기준으로 축산업에

서 사육하는 기간이 1년이내인 것을 유동자산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것을 고정자산으로 보는 방법

3. 부로일려 비육돈 비육우등과 같은 육용(肉用) 가금가축을 유동자산으로 보고 종계, 산란계, 젖소, 종모돈, 종빈돈, 종모우 종빈우등과 같이 가금가축 그 자체를 소비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산물을 소비목적으로 하는 소위 과실용(果實用) 가금가축을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는 방법.

위에서 과실용 가금가축이라고 해서 독자여러분이 동물에서 어떻게 과실이라는 용어를 쓰나 하고 의아할련지 모르나 종제는 병아리를, 산란제는 계란을, 종모돈 종빈돈은 새끼돼지를 그리고 종모우 종빈우는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과일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좀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든다면 은행예금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이자도 회계학상 예금의 과실(果實)이란 용어를 쓴다.

4. 가금이나 가축의 감가상각 유무에 따라 감가상각이 필요치 않은 가금이나 가축을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이 필요한 가금이나 가축을 고정자산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기준을 생각할 수 있겠다.

앞에서 설명한 가금가축의 감가상각이란 전통 기계기구등과 같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같은 것으로 감가상각이란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임으로 결산기간마다 감소된 가치를 추산하여 비용으로서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減價償却)이라고 한다.

이때 감소된 가치를 추산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정액법(定額法): 정액법이란 감가상각을 해야 할 자산의 취득금액의 $\frac{1}{10}$ 을 잔존가액(殘存價額)이라고 해서 제한 남아지 $\frac{9}{10}$ 를 그 자산의 내용년수 즉 사용가능한 수명년수로 일정하게 나눈 금액을 매년 결산기마다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다. 즉, 책상을 10,000원에 구입하였다면 예를 들어 그 책상의 수명인 내용년수(耐用年數)를 5년 이상이라면,

$$\begin{aligned} \text{년간 감가상각액} &= \frac{\text{취득금액} - \text{잔존가액}}{\text{내용년수}} \\ &= \frac{10,000 - 1,000}{5} = 1,800\text{원} \end{aligned}$$

즉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한다면 매년 결산기마다 1년간 가치가 감소된 금액인 1,800원 씩을 비용으로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액법은 다음에 설명할 정율법(定率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있는 것이 결점이며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떻한 물건이든,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가치가 감소되는 속도나 정도가 매년 일정한 것이 아니고 구입초에 가치의 감소되는 정도가 많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감소되는 가치의 정도가 점차로 적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정액법은 이론적으로 모순점이 있다. 그러나 정액법은 계산방법이 간편함으로 취득금액에 많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흔히 이 방법을 사용하나 다음에 설명하는 정율법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다.

(2) 정율법(定率法) : 정율법이란 감가상각을 해야 할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1/10$ 에 해당하는 잔존 가액을 제하고 남은 감가상각해야 할 금액을 매년 일정한 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감가상각처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감가상각할 일정한 율을 감가상각율이라 하며 감가상각율과 내용년수는 세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 설명한 것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인데 건물, 기계, 기구, 가구증기등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리라 믿으나 가금이나 가축같은 생체동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한다고 할때 쉽게 이해가 안되리라 믿는다. 세법상, 감가상각을 하도록 인정하는 축종은 소, 말, 돼지, 면양뿐이고, 가금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금류 중에서도 종제와 산란제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안다. 정부의 축산진흥책에 따라 현재는 축산업 소득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음으로 현재로서는 당장 세무상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정부의 축산업소득의 소득세감면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협행세법상 전액 감면기간인 1975년 12월 31일 이후 1976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세의 50%감면기간과 1979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의 전액과세

기간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감가상각에 세습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줄 안다. 협행세법상, 축산업 소득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음으로 축산업자 여러분이 별로 신경을 안쓰는듯 하나 세법상, 감면혜택에 관계없이 정확한 사업의 성과인 손익 계산과 결산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건물, 기구, 기계, 가구증기등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물론이려니와 가금가축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만 마땅할 줄 안다.

그러면 가금가축의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제에서 축산부기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정한 분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앞에서 설명한바 있는 분류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안다. 즉 유동자산으로 구분할 가금가축은 다음과 같다.

(15) 가금가축계정 : 이 가금가축계정은 후에 설명할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계정”과 구분해서 이해하기 바란다. 편의상 계정명칭을 유동자산중의 가금가축은 “가금가축계정”으로 고정자산중의 가축은 “가축계정”이라 부르는 것이 편리할 줄 안다.

가금가축계정에는 종제, 산란제, 부로일려 메추리, 꿩, 비육돈등이 포함된다.

회계학 이론상으로 볼때 종제와 산란제는 세법상 규정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을 해야함으로 그 사육기간이 육성기간이 경과한 후 산란기간이 통상 1년정도 임으로 유동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종제와 산란제의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다음회에서 설명하겠다. <계속>

정 정

월간양제 11월호 13페이지 한국축산 광고중 타원형내의 탐사진은 아바에이카-70 (초대형부로일려)이 아니고 아바에이카-26 (백색 산란제)이었음으로 이에 정정합니다.